

## **감리지적 사례 FSS/2008-26 : 대여금 계정분류 오류**

- **쟁점 분야:** 대여금 분류
- **관련 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 **결정일:** 2017년
- **회계결산일:** '13.12.31., '14.12.31., '15.12.31.

###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는 원재료 등 매입을 위하여 관계사 B 등 5개 거래처에 선지급한 금액 중 매입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실제로는 현금으로 회수하고 있음에도 기말시점에 이를 매출채권으로 분류하였다. A사는 매입 거래처임에도 매입대금을 초과하는 미회수 잔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거래처별 잔액관리의 편의를 위해 이를 매출채권으로 분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A사가 매입대금 명목으로 선지급한 거래에서는 재화나 용역 등의 이전이 발생하지 않고, 관련 잔액이 현금으로 회수되었다.

###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를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는 바, 실질이 재화와 용역의 이전거래와 관련되지 않는 현금의 지급거래는 자금의 대여 활동으로 보아 관련 금액을 대여금으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16장(수익)의 문단 16.10(재화의 판매)에 따르면 거래를 수익창출 활동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어야 한다. 또한, 수익창출활동이 수반된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매출채권으로,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활동과 관련된 채무는 매입채무로 분류하여야 한다. 하지만 A사가 매입처에 선지급한 금원은 재화·용역 이전이 수반되는 수익활동, 재고자산 매입과 무관한 금전소비대차(자금대여·차입)의 성격이므로 실질에 따라 대여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서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및 500(감사증거)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키는 제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또한,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매입채무에 대하여 회전율 분석, 채무조회서 확인, 미사용 어음실사, 은행조회서 대사를 통한 미회수 전자어음 검토 등 완전성을 확인하였고, 매출채권에 대한 채권조회서 발송을 통해 실재성을 확인하는 통상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으나, 매입채무 및 매출채권 보조원장을 징구하지 않아 기중 거래내역을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거래의 발생원인(매출채권이 아닌 매입대금 선지급액)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 5. 시사점

감사인은 가공자산의 계상, 부채의 누락과 같이 자산·부채의 실재성과 완전성 검토에 초점을 맞추는 통상적인 감사절차만을 수행하여, 본 사례와 같이 매입활동과 무관한 자금거래 등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한 회사의 계정분류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감사인은 거래의 발생원인, 거래관계 확인 등을 통해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명확히 파악하고 재무제표가 이를 반영하여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